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위생업소 소식	3
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	3

##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

작성일 2017.11.13 11:27      등록자 주민복지실      조회수 416

식품위생법 제58조(위반사실의 공표)에 따라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1. 영업의 종류 : 일반음식점
2. 영업소 명칭 : 그때거기
3. 소재지 및 대표자 :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04, 2층 홍\*민
4. 위반내용 :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(업소 내 도박행위 방조)  
(법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)
5. 행정처분  
- 내용 : 영업정지 2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  
- 처분일 : 2017. 11. 13.
6. 단속기관 및 단속일 : 강진경찰서, 2017. 7. 7.

목록

GANGJIN

***Web Contents***

